

수출용 도료용기 UN마크 획득 “시급”

국제 통관 요건 강화 불구 안전책 미비 … 수출차질 우려

국내 도료생산기업들의 도료 수출이 포장용기 문제 때문에 수출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해상을 통한 위험물(화학류, 고압가스, 인화성액체류, 독물류 등)의 수송이 크게 늘어나면서 수송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관상의 요건이 국제적으로 크게 강화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국내업체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거의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수출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수출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페인트로써 국내 수출용 용기 제조기업 중 분리식 용기에서 UN마크를 획득한 기업이 전혀 없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해상인명안전 국제협약에 의해 국제해사기구(IMO)가 제정한 국제 해상위험물규칙 (IMDG Code) 부속서 1에 의하면 위험물 해상운송에 관한 국제환경에 대처하고 운송기간중 관련 취급자에 대한 안전성제고를 위해 UN마크제도의 도입을 의무화했다. 따라서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이를 국내법으로 수용,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ℓ 용기, 드럼, 벌크포대, 컨테이너 등 국가간 위험물 운송에 사용되는 용기제작기업들은 국내법인 선박안전법과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정기관에서 용기시험을 거쳐 UN마크를 받아야 한다.

국가별 도료 수출액		(단위 : 1000달러)		
구 분		1990	1991	1992
중 국		3,693	12,990	21,683
홍 콩		5,504	7,938	12,554
대 만		7,440	9,490	9,259
인도네시아		1,440	3,630	7,188
말레이시아		557	862	5,721
타 이		1,367	4,931	4,741
멕시코		236	3,596	3,846
일 본		1,470	1,561	1,784
싱가폴		1,260	935	1,744
이태리		216	1,004	1,010
러시아		1	107	780
아랍에미리트		201	177	603
미얀마		130	1,519	522
미국		300	281	487
네덜란드		135	66	421
필리핀		2,117	729	264
기타국가		3,220	4,387	6,708
계		29,287	54,203	78,006

자료) 상공부 수출입 통계

UN마크란 각종 위험물의 안전한 해상운송을 위해 용기 및 포장외부에 표시토록 한 국제연합부호 및 번호를 말한다. 위험물 수출기업들과 해운기업들은 UN마크가 표시된 용기 및 포장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데, 이 마크에는 내용물의 종류, 용기 및 포장에 관한 제반사항, 적재시 참고사항 등이 명시된다.

국내 선박안전법 제 16조에 의거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이 92년 7월15일 개정·공포된 후, 1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올 8월15일부터 수출용 페인트의 UN마크 용기사용이 의무화 되었으나 국내 제관업체가 UN마크에 대해 숙지하고 있지 못했다.

또한 현재 20ℓ 용기에 사용되는 철판은 0.35mm이나 UN마크 획득시에는 0.45mm 이상 두께의 철판

을 사용해야 하므로 용기생산시설을 대체해야 하나, 제관업계의 영세성으로 인해 시설대체 비용 2000만~3000만원 정도의 신규 투자가 어려워 시행일까지 대비책을 강구치 못했다.

페인트용기에는 분리식과 비분리식이 있는데 비분리식용기는 국내 몇 개의 제관기업들이 UN마크를 획득했으나 수요자가 사용의 편리함 및 비용절감차원에서 선호하고 있는 분리식 용기에 대해서는 아직 UN마크를 획득한 제관기업이 없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에서는 페인트를 수출하기 위해 분리식 용기를 사용할 때 소요되는 UN마크 용기를 수입함으로써 원가상승요인이 발생하고, UN마크 용기를 수입한다 해도 델리버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영세한 제관업계가 단기간내에 UN마크를 획득하리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등의 문제점을 들어 이 조항의 실행시기 연기를 요청했다.

이는 액상일 경우 비분리식 용기를 사용해야 하나 현재 수입선(소비자)에서는 사용이 불편한 비분리식 용기를 거부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주무부처인 해운항만청은 이 조항의 실행시기를 93년 11월 30일까지 유예조치하여 12월1일부터 검사받은 용기만을 사용케 하기로 했다.

한편 UN마크 용기 사용을 수입국 사정에 따라 선별 적용할 것과 UN 마크 용기일지라도 포장용기 검사시 시험용기로써 낙하,기밀,수압시험 등에서 모두 12개가 필요,소량 수출할 경우 견본수를 하향 조절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또 수출오더에 따라 매회 실시하는 용기검사에 대해서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해운항만청으로 부터 모두 부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92년 국내 페인트 수출액은 총 7,800만달러인 것으로 집계됐다.